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31호 2026. 2. 23. (월)

고시 · 공고

-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1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3.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86개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공용차량 관리강화를 위해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신설

1. “공용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 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 규칙 제4항을 삭제한다.

○ 규칙 제21조 제4항 신설

- 목포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규칙 제28조 제3항 신설

- 차량 운영 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기간 : 2026. 2. 23. ~ 3. 16.(21일)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6일까지 목포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회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51),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회계과(☎061-270-8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용차량”이란(이하“차량”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0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목포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차량 운영 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신설>	1. <u>“공용차량”이란(이하 “차량”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u>
2. <신설>	2. <u>“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u>
1. ~ 11.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20조(차량 관리부서 지정)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목포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u><삭제></u>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② (생략)

③ <신 설>

④ 목포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량 운영 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차량의 보유 및 운영 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별지 제14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승용(업무용)						승합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총 보유수	합계(원)	총 유류비 (원)	총 보험료 (원)	총 수리비 (원)	세금 및 부담금(원)
대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사용자	차 이름	배기량(cc)	구입비(천원)	차량등록일	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	유류비(원)	수리비(원)	보험료(원)	자동차세(원)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교체(매각)차량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총 주행거리	총 운행기간	매각사유

교체(구입)차량						
차량등록번호	용도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구입가격(천원)	구매사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3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구분	종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비 고
1	목포시 용해동 407-1	목포시 용당로 344	2026. 2. 2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3.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 변경 (안 제8조)
 - (현행)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개정)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6. 2. 23. ~ 3. 16. (21일)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6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0분의 50으로”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u>100분의 50으로</u> 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u>재산세</u> <u>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u> <u>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u> <u>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u> <u>분의 25로 ---.</u>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